자체평가 운영규정

제정 2016년 07월 15일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건신대학원대학교(이하 "본교" 라 한다)의 자체평가(이하 '평가'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평가원칙) 평가는 객관성·공정성·신뢰성이 있어야 한다.

제3조(평가대상) 평가대상은 본 대학 운영전반을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평가영역) 평가영역은 대학정보공시 내용을 포함한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교육·연구 영역
- 2. 조직 · 운영 영역
- 3. 시설·설비 영역
- 4. 기타 총장이 요구하는 영역

제5조(항목별 평가) 평가영역의 항목별 반영비율, 항목별 평가점수의 산출기준, 항목별 평가 등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평가시기) 평가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, 평가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 제7조(전담부서) ①자체평가의 총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둔다.

- ②전담 부서장은 업무분장 규정에 따라 평가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③전담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자체평가업무 총괄
- 2. 자체평가 역량향상
- 3. 평가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
- 4. 자체평가 영역 및 반영비율 개발

제2장 자체평가위원회

제8조(자체평가위원회 구성) ①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고, 평가를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대학자체평가 자문 및 심의를 목적으로 하며, 평가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총장이 위촉하다.

-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담 부서장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수 있다.
- ④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대학 자체평가 보고서 심사 및 자문
- 2.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자문

제10조(위원회 의결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, 재적위원 1/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회의 결과를 총 장에게 보고한다.

제3장 평가방법

제12조(평가계획 수립) 전담 부서는 매 자체평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, 평가계획을 행정부서 및 각 과에 통지한다.

제13조(평가자료 제출) 평가실시 1개월 전까지 행정부서 및 각 과는 전담부서에 평가 자료를 제출한다.

제14조(평가실무추진단 구성) ①평가실무추진단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평가실무추진단은 평가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.

제15조(실사) 평가위원회는 보고서의 심사를 위하여 해당부서 및 각 과에 실사를 할수 있다.

제16조(평가결과 보고) 전담 부서장은 작성한 평가 자료와 행정부서 및 각 과의 서류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17조(평가결과의 공시 및 활용) ①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대학운영 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체 점검·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를 공시한다.

②평가결과는 대학발전계획과 전략수립 등에 활용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